

● 교재 31페이지 ★★★ - 원산지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신설)

(3) 경정한 물품의 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자(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경정) 또는 제39조제2항(추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3)-1 원산지 정보교환시스템

수입자는 상기(2) 또는 (3)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 원산지증명서 제출요구

세관장은 (3)-1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